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김정재·정운천·이종배

성일종 · 송언석 · 양금희

이 용・태영호・한무경

배준영・金炳旭・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의 사후 관리 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아 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 화하고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3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당"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및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의2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아</u>	<u>보</u>
<u>동복지시설</u> 의 장의 의견을 들	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른 전담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	의료기관의 의사 및 아동복지시
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u>설</u>
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	
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3
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u>해당</u> 아동의 의견을 존중	<u>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u>
하여야 한다.	기관의 상담원, 제29조의7에 따

④・⑤ (생략)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른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및	해
<u>당</u>			
<u>.</u>			
④·⑤ (현행과 같음	읔)		
제45조(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설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 <</u> 딘	<u>:서</u>
<u>삭제></u>			
③ ~ ⑤ (현행과 4	n. O.)		
제53조의2(학대피해		키터	o]
지정)			
지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u>설>

 2의2.
 (생 략)

 2의3.
 삭 제

 3.
 ~ 7.
 (생 략)

법률	제1720	5호	아동	복지	법
	일부기	개정	법률역	간	
제71조(특	벌칙) ①) (३	현행과	- 같	음)

(2)	 	 	 	

1. • 2. (현행과 같음)

2의2.제28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람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현행과 같음)